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179,000	10,505,370
일반회계	336,006,000	10,080,180
특별회계	14,173,000	425,190
기타특별회계	14,173,000	425,19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81,876	35,456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188,200	65,64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155,460	34,664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0,992	4,53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220	1,987
드림빌특별회계	2,787,735	83,632
건축진흥특별회계	135,000	4,05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35,960	34,0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1,557	161,14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62,32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